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76 판결 [공사대금청구의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171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76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실내장식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주방 등 실내공사를 하는 사람이며, E는 피고의 형이다.

나. E는 2017. 11. 23. 건축주 F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11. 28.부터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서귀포시 G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H의 현장소장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관리 및 감독하였는데, H의 대표이사는 E의 배우자이다.

라.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로, 계약금액을 4,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수장공사대금으로 2018. 3. 26.에 980만 원, 2019. 6. 20.에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1. 23. H와 사이에 이 사건 수장공사의 정산금액을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H가 원고에게 2019. 2. 23.까지 잔금 3,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장공사대금 3,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관리를 부탁받고 임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E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장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발주자로 ‘D B’이라고 피고의 이름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인 ‘원사업자’ 란에도 피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보아야 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E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H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H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이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이 사건 수장공사를 감독한 사실, 원고가 H로부터 잔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년 3월 무렵 피고가 H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E가 계약당사자라거나 피고가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도급자인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당사자가 처음부터 E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계약당사자를 E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E는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건축주 F를 상대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9가소32835(본소), 2019가소33470(반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계약당사자는 E이고 H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H의 대표이사가 E의 배우자이고, H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이 E의 처남이며, 피고가 이 사건 수장공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와 E, H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E 또는 H이 이 사건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H이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E와 H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H이 원도급자인 E를 대신하여 정산합의를 한 것이거나 시공사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정산합의서에 피고에 대한 면책 등의 기재가 없는 이상 H이 피고의 이 사건 수장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3,220만 원(= 5,200만 원- 1,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